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471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강석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정지웅,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청년과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조항번호에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 (안 제2조제1호)
- 나.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 다. 조항번호를 수정함 (안 제5조제3항~제5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lt;신 설&gt;</u></p> <p>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②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p> <p><u>&lt;삭 제&gt;</u></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청년과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청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연령 기준이 상이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정의)에서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고, 제2조제1항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제2조”에서 “제2조제1호”로 정정하여 조문 간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등 조문정비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